



의안번호	제138호
회의 연월일	2025. 11. 17. (제576회 정기회의)

심의
·
의결
사항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(행정안전부령)

제출부서	경찰청 (범죄예방대응국)
제출연월일	2025. 11. 3.

범죄예방운영계장, 범죄예방정책과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자율방범 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 중복 개소 설치로 인한 단체 간 갈등, 행정력 낭비, 조직관리 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의 설립 기준 정립과 설치 개소 한계 설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20호, 2025. 8. 14. 공포, 2026. 2. 15. 시행)됨에 따라 현행 규칙 상 중앙회 등 설립 기준 관련 개정 법률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8조(중앙회 등의 조직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는 전국 단위로, 같은 항에 따른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단위로, 같은 항에 따른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는 시·군·구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	
연 락 처	(02) 3150 - 2866